

최저임금 해결사

일자리 안정자금

신청! 놓치지 마세요~



최저임금 해결사

일자리 안정자금이란?

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.



○ 지원대상: 최저임금(2018년도 시급 7,530원) 준수 및 고용보험가입을 한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 **사업주**(사업 1개월 이상 영위)

※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 경비원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

○ 지원금액: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(소급적용)

☞ 월중 입·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☞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

○ 신청시기: 시행일(2018.1.1.)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지급 후 신청

○ 신청방법:

(온라인)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

- 일자리안정자금 (<http://www.jobfunds.or.kr>)

(방문·우편·팩스) 공동접수처

※ 공동접수처: 거제 고용복지+센터, 거제시, 각 면·동사무소,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

◆ 문의전화 055-730-1950, 팩스 0505-130-1114 ◆